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7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서왕진 · 이연희
허종식 · 임미애 · 이수진
김남희 · 윤후덕 · 박 정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전기사업법」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929호)은 현행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: Renewable Portfolio Standard, 이하 “RPS”라 함)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,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(같은 법 제12조의18) 및 과징금(같은 법 제12조의19)을 새로이 신설하고,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「전기사업법」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「전기사업법」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

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9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

2의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19에 따른 과징금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0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.	제50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 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의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법」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 대체이행금</u>
<u><신설></u>	<u>2의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법」 제12조의19에 따른 과징 금</u>
3. 4. (생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② ③ (생략)	② ③ (현행과 같음)